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우리 생활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

- 공직자 등의 직무상 지위 권한을 이용한 특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 등에게 민원 등 특정행위 요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기합니다
-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 등에게 불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법한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소관기관 등에 신고합니다.
- 공직자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2회 이상 받으면 소속기관에 신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죠? **청탁금지법 FAQ**

①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인가요?

☞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② 공직자 등인 친구와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제가 계산하면 반드시 처벌인가요?

아닙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와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선물,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본인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간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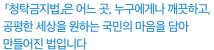
청렴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가

시작 립니다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



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직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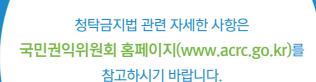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TEL:(044)200-7619 FAX:(044)200-7939 www.acrc.go.kr







이제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 업무의 처리·조작
-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 행정지도 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 사항 묵인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 투자 등에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에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 행위 요구, △공공기관 업무 관련 확인·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 등 입니다.

금품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회, 신뢰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이런 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등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오랜 친구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청렴 대한민국'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시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관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

조사, 감사,

징계 처분, 과태료 부과, 공소 제기 등

조사절차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도 │ ◎ 불이익조치 금지 ◎ 원상회복 조치
 - ◎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 책임감면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형벌
금품등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형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만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3·5·10 예외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

☞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 입니다.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선물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3만원

10만원